

## 신 .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여비의 종류) ①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국내 여행을 할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(철도운임, 선박운임, 항공운임, 자동차운임), 현지 교통비, 숙박비, 식비, 식탁료로 구분한다.  ② (생략)	제5조(여비의 종류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현지 교통비, 숙박비, 식비로 구분한다.  ② (현행과 같음)
제6조(일비지급기준)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는 출석일수 1일에 <u>30,000원</u> 으로 한다.	제6조(일비지급기준) ----- ----- <u>50,000원</u> -----.
제8조(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) ①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에 있어서는 별표 3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. ② 제1항에서 “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”이라 함은 의정부시 시내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.	(삭 제)

## 【 5 】 양주군의회회의규칙증개정규칙안

발의년월일 : 1994. 7. 29.

발 의 자 : 김재현의원외 1인

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(1994. 7. 6 대통령령 제14.317호)됨에 따라 현행 회의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. 보완하려는 것임.

### 주요골자

가. 군수등 관계 공무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. 답변하여야 하며 (안 제66조 제1항)

나.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. 답변하게 할 수 있음. (안 제66조 제3항)

다. 대리 출석. 답변의 경우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개시전까지 통지하도록 함. (안 제66조 제3항)

---

### 양주군의회 규칙 제 호

#### 양주군의회회의규칙증개정규칙안

양주군의회회의규칙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때에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은 출석. 답변하여야 하며,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. 답변하게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 개시전까지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#### 부 칙

이 규칙은 의결일 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 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6조(군수등의 출석요구) ① - ② (생략)</p> <p>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, 답변하여야 하며, 군수가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 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했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, 답변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66조(군수등의 출석요구) ①-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은 출석, 답변하여야 하며,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, 답변하게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개시전 까지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
## 【 6 】 1993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

발의년월일 : 1994. 7. 29.

발의자 : 이은선의원외 1인

##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양주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양주군의 1993회계년도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을 선임하려는 것임.

## 주요골자

1. 선임위원수 : 3인

2. 선임위원 대표위원 : 권선안 의원

위 원 : 박홍문, 김상오

3. 위촉기간 : 94. 8. 22 ~ 9. 10 (20일)